

#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341
----------	------------

2022년 12월 16일  
행 정 자 치 위 원 장

## 1. 수정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지시문에 따를 경우, 개정 취지와 다르게,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각 호가 삭제되는 오류를 방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옴부즈만 위원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각 호와 안 제7조제2항제8호의 청원사항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 개정지시문을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 개정지시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 
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  
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 
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 수정안 개정지시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u>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 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	<p><u>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u>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</p> <p>1.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</p> <p>2.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</p> <p>3.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·중재</p> <p>4.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</p>	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5.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</p> <p>6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</p> <p>7.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(이하 "감사위원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시의회에 관한 사항</p> <p>2. 행정심판,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</p> <p>3.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. 다만,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p>	<p>8. 「청원법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</p> <p>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<u>1. ~ 6. &lt;삭제&gt;</u></p>	<p>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③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1. ~ 6. (현행과 같음)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4. 검찰·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</p> <p>5. 법령에 따라 화해·알선·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 확정된 사항</p> <p>6.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</p>	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청원법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 
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  
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 
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6조”를 “제25조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조사·처리”를 “조사·처리, 청원의 조사·처리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여성복지, 도시안전, 산업경제(생활환경), 도시교통(도시계획), 교육문화, 일반행정의 6개”를 “복지정책, 도시안전, 도시계획, 주택정책, 산업경제, 문화관광, 기후환경, 도시교통, 보건의료, 행정자치 등 10개”로, “35명”을 “1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6조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을 “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가 구성하여 운영 중인 법률자문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법률자문단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26조</u>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</u> <u>시행령 제2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<u>청원법</u>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</p> <p>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</u></p>



현행	개정안
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16조(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)시행령 <u>제26조</u>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24조(직권에 의한 감사) ① 위원은 시민·주민감사, 고충민원의 <u>조사·처리</u>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<u>여성복지, 도시안전, 산업경제(생활환경), 도</u></p>	<p><u>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 <u>제2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직권에 의한 감사) ① --- ----- -----<u>조사·처리, 청원의 조사·처리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복지정책, 도시안전, 도시계획, 주택정책, 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시교통(도시계획), 교육문화, 일반 행정의 6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26조(시민의 감사 등 참여) 위원 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함에 있 어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경우 시 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.</p>	<p>업경제, 문화관광, 기후환경, 도시 교통, 보건의료, 행정자치 등 10개 분야 총 100명 ----- ----- . 다만,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시민의 감사 등 참여) <u>위원회</u> 는 ----- ----- - <u>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</u> <u>수 있으며, 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